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를 ‘자정’ 으로 명칭 변경 등〉
■ 정부발의(의안번호 제220229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으로 명칭 변경 등	2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 등	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으로 명칭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현행 ‘인증’ 제도를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33조제4항, 제86조제1항제2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u>인증</u> 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 ----- ----- --- <u>지정</u>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u>인증</u>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인증</u>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u>지정</u> ------. ----- ----- <u>지정</u>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u> 을 받은 경우	1. ----- -- <u>지정</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u>인증</u> 의 취	3. ----- ----- <u>지정</u> ---

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 ⑪ (생략)

③ ----- 지정하거나 ----- 지정을 -----.

④ ----- 지정, 지정취소-----.

⑤ ----- 지정-----.

⑥ ----- 지정을 ----- 지정서-----.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u>인증서</u> 를 대여한 자	2. ----- ----- ----- ----- 지정서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¹⁾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1)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별표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제3조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300명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현 ‘인증’ 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장애인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이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실제 ‘인증’ 제도와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바,

그 명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인증규제 개선방안’²⁾을 발표하면서,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등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 인증은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데, 인증 제외 91개 항목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포함되었음.

2)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2.27.)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②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	--

나. 검토의견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4년 기준 민간 3.1%, 공공 3.8%)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³⁾ 상시 100명 이상의

3)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장애인
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⁴⁾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장애인 고용의
무를 부과하면서('24년 기준 3.8%),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
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
음.⁵⁾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연도 1월 31일(연도 중 사업이 종료된 경우
에는 종료된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
요한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4)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함.⁶⁾

그런데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월 단위로 부과하던 증가산금을 일단위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22.6월 시행),⁷⁾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부과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로

6) 「장애인고용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7)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서 일 단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부의무자의 연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도과할 경우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게 되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행 연체금 부과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연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은 부과 방식과 함께 가산금 부과 요율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부과 요율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현 행(시행일: 2022. 6. 15.)
제5조의3(가산금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제5조의3(가산금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2)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현행법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함.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⁸⁾ 이에 대한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안 제36조의2 신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맞춰 현행법 내에 권리구제절차를 신설하여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운영 중인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한 이의신청 외에 해당 행정청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 수단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참고 1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 부담금 부과방식

- (부과대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 (산출방식)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

〈'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의무 충족률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100%미만 고용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6%(월 1,311,22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20%(월 1,484,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 + 40%(월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 (가산금 부과)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월단위로 추가 부과

□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8	'19	'20	'21	'22	'23
납부액	552,121	619,090	755,756	767,611	763,688	829,580

참고 2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개요

- (정의)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현황)

(‘24.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인증 표준사업장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계	703	27,863	16,198	13,000	58.1
일반	548	16,685	8,897	7,106	53.3
자회사형	154	11,134	7,256	5,850	65.2
컨소시엄형	1	45	45	44	100

- (설립 지원) 작업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

-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

- (판로확대 등 운영지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가능

-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연계고용)
- 표준사업장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문 의 처
02)6788-5539